

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1월 21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민간위탁과 달리 「지방자치법」 공공위탁 근거 규정 이외에 공공위탁 선정·절차 등의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공위탁 시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를 하도록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은 “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”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함. (안 제12조제1항)

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에 <u>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</u> 공공위탁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성착취물 등”을 “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(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, 성명, 나이, 직업, 학교, 용모,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, “피해자를”을 “피해자의 일상회복을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영상”을 “영상 및 신상정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